

건축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244호
개정 : 1979. 9. 1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제 1 항의 표중(1)난, (2)난, (8)난 및 (11)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건축물의 종 별	도서의 종 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모든건축물	부근안내 도	임의	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2. 대지의 전경사 진
		배 치 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경계선 3. 건축선 및 대지 의 경계선으로부 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 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 옹벽. 우물 오물 정화조 · 배 수시설 기타 건축 물에 부수되는 시 설의 위치
		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토지의 굴착 부 분의 정리계획
		토지굴착 부분정리 계 획 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 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 문의 위치 5.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각 층 평 면 도	1/50 내지 1/300		1. 축척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 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 문의 위치 5.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 의 위치·기계실 기계배치와 승강 장의 위치및 폭 8. 기타 승강기, 에스카레이타의 위치, 기계실 및 기계배치
4 면이상 입 면 도	1/50 내지 1/300		1. 축척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3. 굴뚝의 옥상 돌 출부 4. 국기계양대
2 면이상 의 주단 면및부분 상세도	1/2 내지 1/300		1. 축척 2. 거실의 바닥높 이, 건축물의 높 이, 각종의 반자 높이 3. 지붕·천정·벽 기둥·바닥의 구조 (단열재료및 열 관류율의 값을 포 함한다) 4. 내화구조의 기 둥·벽 및 바닥구 조 5. 처마 및 방화문 의 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7. 계단 또는 경사 로의 구조 8. 붙임돌의 두께

				및 집합방법 9. 변소의 구조 10. 담의 구조
	공사시방 서	임의		1. 도면으로 표현 되지 아니한 재료 의 품질·공법등 2. 기타주의사항
(2)	법제20조 제 2항에 해 당하는 건 축물	오물정화 조의구조 도	1/30 내지 1/50	오물정화조의 평면 상세, 중횡단면 상세
8	기타 건축설 비에 관한규 정에 해당하 는 건축물	건축설비 도	임의	승용승강기·에스카 레이타·전기설비기 타 건축물에 설치하 는 건축설비의 구조
		전기설비 용량계산 서	임의	건축물의 전기설비 용량산정 및 산정과 정
(11)	영 제168조 의 3에해당 하는건축물	조경계획	임의	1. 축척 2. 식수평면 계획 식수면적 계산 3. 수종·수형·수 목의 규격 4. 식수 공정 계획 5. 기타 조경 구조 물의 배치및 상세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미만	25,000	—
5,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미만	50,000	—
10,000평방미터 이상 30,000평방미터미만	100,000	—
30,000평방미터 이상	200,000	—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6조제2항”을 각각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영제6조제3항”을 “영 제6조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1급건축사”를 “건축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는 이를 “준공신고를 한 후”로 하고, 제2항 제1호의 “준공검사필증”은 이를 “준공신고서”로 하여, 동항 제3호중 “준공 검사필증교부시”는 이를 “준공신고서”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합동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건축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손괴의 방지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6층이상의 층의거실 면적의합계 건축물용도	3,000 평방미터 이 하	3,000평방미터 초 과
의 료 시 설		2 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이 내마다 1 대의 비율로 가 산한 대수
관 랑 집 회 시 설	2 대	
관 매 시 설		
전 시 시 설		1 대에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2,000평방미터
위 락 시 설	1 대	

제1조제3항 본문중 “영 제6조제1항”을 “영제174조의 2”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영 제5조제2항”을 “영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물의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재해지구의 재해 복구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대상 건 축물	기타의 건축물
면 적		
200 평방미터 미만	5,000	2,000
200 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	10,000	3,000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교육및연구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기타	1대	1대에 3,000평방 미터를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이 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 산한 대수

제24조내지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온돌아궁이 및 고래부분의 구조) ① 고정식 아궁이 연소통의 주위벽, 이동식 아궁이의 함실벽 및 아궁이의 바닥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온돌단열층(시멘트와 연탄재를 1대 7의 용적비로 배합하여 시공하는 몰탈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열전도 저항의 값이 $0.5m^2h^{\circ}C/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돌의 고래바닥과 구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하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m^2h^{\circ}C/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시설·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m^2h^{\circ}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

관류율의 값이 $1.8Kcal/m^2h^{\circ}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자(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자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m^2h^{\circ}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Kcal/m^2h^{\circ}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전기 설비용량) 영 제1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등배선(소형 전기 기기용 배선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전기설비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업무시설 : 20와트/평방미터
2. 판매시설 : 35 "
3. 공동주택 : 20 "
4. 숙박시설 : 30 "

제27조(지하층 설치의 특례) 영 제180조제 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함은 장기 용력에 대한 허용용력도 200톤/평방미터 이상을 말한다.

[별지 제 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